

서울특별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

(이동현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473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5월 28일
발 의 자 : 이동현 의원(1명)
찬 성 자 : 권수정, 김기덕, 김생환,
김제리, 김평남, 김희걸,
박기재, 양민규, 이영실,
이정인, 이태성, 임종국,
전석기, 최 선, 한기영,
홍성룡 의원(16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시의 청소년정책을 종합적,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청소년 정책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기본이념에 대해 규정함(안 제2조)
- 나.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 규정함(안 제4조)
- 다. 청소년육성을 위한 시장의 책임에 대해 규정함(안 제6조)
- 라. 청소년육성 시행계획 수립·시행 의무에 대해 규정함(안 제8조)
- 마. 청소년의 날에 대해 규정함(안 제9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청소년기본법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
서울특별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청소년 기본법」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본이념) ① 이 조례는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.

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·종합적 청소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추진 방향으로 한다.

1. 청소년의 참여 보장
2.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의 능동적 삶의 실현
3. 청소년의 성장 여건과 사회 환경의 개선
4. 민주·복지·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 향상

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청소년 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에 따른다.

제4조(청소년의 권리와 책임) ①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은 청소년활동·청소년복지·청소년보호 등 청소년육성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.

② 청소년은 인종·종교·성별·나이·학력·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

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.

③ 청소년은 외부적 영향에 구애받지 아니하면서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.

④ 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하고 정신적·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.

⑤ 청소년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여 가정·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청소년의 자치권 확대)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
② 시장은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·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,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·협의·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·협의회 등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④ 시장은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.

⑤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는 「서울특별시 어린이·청소년 인권 조례」 제50조에 따라 설치·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어린이·청소년참여위원회로 본다.

제6조(시장의 책임) ①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.

④ 시장은 법 및 이 조례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실시하여야 한다.

제7조(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) ① 서울특별시의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청소년육성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.

제8조(청소년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등)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청소년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방향
2. 청소년육성에 관한 추진목표
3.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능의 조정
4. 청소년육성의 분야별 주요 시책
5.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
6.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-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·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④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·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.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⑤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

제9조(청소년의 날) ① 시장은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드높이고 모든 시민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날을 지정할 수 있고,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0조(청소년시설의 설치·운영) 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시설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.

제11조(청소년활동의 지원) ① 시장은 법 제47조에 따라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.

제12조(지원사업) ① 시장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.

1.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·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사업
2.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
3.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
4.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
5. 청소년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
6. 그 밖에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사업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·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문서번호

2021052400000018

미침부 사유서 (1호)

요청인 : 이동현 의원

담당 : 조도형 과장
이정수 팀장
백소영 주무관

접수일 : 2021. 05. 24.

회신일 : 2021. 05. 26.

내용문의 : 02-2180-7954

서울특별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침부 사유서

목 차

1. 비용발생 요인
2. 미침부 근거 규정
3. 미침부 사유
4. 작성자



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
예산정책담당관
Seoul Metropolitan Council

○ 청소년의 날 행사 등 운영 비용 = $\sum_{i=1}^5$ (연간청소년의날행사등운영비용)_i

i = 비용추계 연차(2021년~2025년)

- 연간 비용 ≙ 36,000천원

· 청소년의 날 행사 등 운영 비용은 서울시 평생교육국의 어린이날, 성년날 기념행사 개최 사업비를 준용하여 추계

- 사업목적 : 어린이날 기념행사 개최를 통해 어린이들의 자부심 향상 및 서울사랑 제고
성년이 되는 청소년들의 전통성년례 참가를 통해 사라져 가는 전통문화의 가치를 깨닫게 함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예산 내역	
어린이날, 성년의날 기념행사 개최	○ 어린이날 기념식(서울시민상) 심사 및 시상 운영	= 8,000
	○ 성년의날 기념행사	= 28,000

자료 : 2021년 서울시 예산서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 당 관 조도형

사업평가팀장 이정수

주 무 관 백소영

☎ 02-2180-7954

e-mail : thdud36@seoul.go.kr